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2025. 11.



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 경찰청]
[교육부 · 보건복지부]

순 서

I.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1
II. 현황 및 원인 진단	3
III. 추진 방향	6
IV. 추진 과제	7
1.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7
2. 아동·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11
3.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13
V. 향후 계획	17
【붙임】 부처별 세부 과제	18

I.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필요

- 서울 서대문 약취·유인 미수(8.28.) 이후 전국적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여전
-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 아동 대상 범죄는 단 한 건으로도 국가 안전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9.11. 대통령>

□ 각 부처의 아동 안전 확보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

- 경찰은 지난 9.12.부터 통학로 가시적 순찰 강화, 학생 유괴예방 교육·홍보, 아동보호인력 확충 등 전방위적 현장집중형 대책을 추진
 - 그럼에도 연이은 유사 사건 발생 및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 체감과 달리 약취·유인 범죄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 대상 범죄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척결 필요

□ 아동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근본적 원인 해결 필요

- 그간 대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각 부처별 단편적·단발성 수준 한계, 사전 차단·예방보다 발생 후 대응으로 불안을 반복하여 자극
-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아동 대상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 원인에 대한 관련 부처의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 안전·치안·교육·복지 쏠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생태계” 구축 필요

2. 추진 경과 : 경찰청,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 집중 활동 실시

- 경찰 경력(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누적 98,895개소·204,122명 배치, 하교 시간대 일시점 최대 19,822명 투입하여 통학로 가시적 순찰 강화 (9.12~10.2)
※ 집중 기간(~10.2.) 이후에도 시·도경찰청별 탄력적으로 등하굣길 순찰인력 운영 중
- 아동안전지킴이(10,811명*) · 자율방범대(95,304명) 등 민간 협력단체와 협업, 순찰 강화 및 아동안전지킴이집^{9,982개소} 재정비(10월말)

- ▲ (아동안전지킴이) 아동복지법 제33조 근거, 학교 주변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 안전 보호 인력, 각 시·도 자치경찰 주관 선발·운영, 日 3시간 근무
※ 전국 10811명 ⇨ 410명 증원 추진(10월말 기준 312명 증원 완료), 추가 선발 시 치안 전문성 고려
-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복지법 제34조 근거,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를 위해 문구점 등 아동 출입이 용이한 사업장을 선정, 각 시·도 자치경찰 주관 지정 및 운영

- (집중 예방활동) 학교전담경찰관(SPOL^{1,135명})이 전국 초등학교 6,183개교 진출 집중 교육 및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카드뉴스 제작·배포
- (통학로 특별 안전진단 실시)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432명}) 중심, 통학로 범죄 위해요소 정밀 진단, 취약요인을 적극 발굴·개선(1,140건)
- 특히,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뿐 아니라 교통사고 취약시설 등 정밀 진단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초등학생 비상경보기 2,000개 배부 △학생 안전지도 제작 등
- (112신고 총력 대응) 아동 관련 범죄 신고 접수 시, C1 이상^{C0·C1}으로 지정,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동시 출동하여 총력 대응
※ 사건 종결 시 경찰서장 주재 합동심의위원회(총 21회) 통해 책임감 있는 신고 처리 분위기 조성
- (엄정 수사) 관련 강력범죄 확인 시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 엄정 대응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검·진행사건 일제점검 실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장점검(9.23.)>



<SPO 예방교육>



<학교 주변 순찰 강화>

II. 현황 및 원인 진단

1. 현황

□ 통계 분석 ('23년 ~ '25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741건 분석)

- (발생 추세)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 건수는 등락을 반복, 유의미한 변동은 없는 상황 ('23년 257 → '24년 233 → '25. 10. 31. 251)
 -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족간 이혼 소송 또는 양육권 분쟁* 관련 사건을 제외한 경우, **모르는 자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도 큰 변동은 없음** ('23년 190 → '24년 157 → '25. 10. 31. 187)

*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도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17.12월)

- 한편 서대문 약취·유인 미수 사건(8.28.) 이후 약취·유인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오인신고도 덩달아 증가하며 범죄 불안감을 가중**

- ▲ 경남 ○○, 할머니들이 초등학생에게 간식준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는 신고 → 교인이 선교활동 중 아동에게 말을 건 내용으로 확인, 경고 후 현장종결
- ▲ 대전 ○○, 어떤 사람이 손녀(초4, 11세)사탕을 주면서 다른 데로 가자고 유인했다는 조모의 신고 → 아이가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명, 허위신고 마감

- (발생 사건 분석) ^{장소}노상, 학교, ^{시간}하교 시간(15~18시)에 주로 발생

* 심야시간대(00시~03시), 거주지 발생의 경우, '가족간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등으로 추정

피해자-피의자

피해자는 주로 저연령 아동(약 75%), 피의자와 모르는 경우 多

- ▶ (피해자 연령) 7~12세(초등)가 약 50%, 6세 이하(유치원)는 약 25~28% 수준으로 저연령 아동(약 7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모르는 사람(50% 내외), 부모 등 가족 (30% 내외),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5% 내외), 이웃(2% 내외) 順

사건 관련

3년간 발생 741건 중 394건(53%) 송치, 송치사건 중 51건(13%) 구속

- ▶ (범행 동기) 이혼소송·양육권 분쟁(28%), 호의 표시·호기심·장난 (21%), 즉석만남·성적만족(9%) 順이며, 구속 사건은 즉석만남·성적만족(29%), 호의 표시·호기심(25%) 順
- ▶ (발생 장소와 피의자 주거지까지 거리) 전체 사건 중 3km이상(40% 내외), 500m 미만(20%), 1~3km미만(15%) 順이며, 모르는 사람이 범행한 경우도 1km 미만인 경우가 45%임

2. 원인 진단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국민의 목소리

“아이들은 모르는 어른이 말을 걸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범인들이 구속되지 않는 행태에 화가 난다.”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 좋겠어요. 유괴의 유자도 못 떠올리게요”

- 모르는 자에 의한 약취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약 50% 내외) 하는데, 아동 유인 행위를 단순 ‘장난’ 등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
- 수사단계에서 행위자의 고의 입증에 쉽지가 않는데다, 추행 등 목적 없는 단순 약취·유인 미수는 비교적 처벌이 높지 않은 문제
 - ※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며, 양형기준 역시 낮음
 - ※ 5대 강력범죄 송치율은 67% 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송치율은 54%로 상대적 저조

□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

국민의 목소리

“실제 범죄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른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나. 평소에 더 실질적인 훈련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일면식이 없는 아동과 불필요하게 말을 건다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 (아동 교육) 최근 약취·유인 사건을 보면 피해 아동은 대체로 그간 교육된 유괴예방 지침^{싫어요!안돼요!도와주세요!}대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의무 교육 중인 유괴 예방교육*을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실질적 교육으로 강화 필요
 - * (근거)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범죄 인식의 문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오롯이 피의자의 가해 행위 자체에 원인이 있으며,
 - 특히 ‘장난’ 등 이유로 아동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 정작 아동이 느끼는 공포·불안에는 공감감이 부족한 문화

- 성인의 약취·유인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일반 국민 상대 교육·홍보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

※ 약취·유인 행위가 주로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이뤄지고, 아동이 심각한 공포감과 추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

□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국민의 목소리

“아이와 함께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CCTV를 본 적이 없어요.”
 “워킹맘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등하원 도우미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무리 남자 초등 학생이라지만 어린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 (범죄예방환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등에 설치된 CCTV(전국 55만여 대*)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자체의 통합관제 CCTV는 65만여 대에 달하여 육안 관제에 한계가 있음

* 생활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설치된 경우

- 최근 급격히 발전한 AI 지능형 영상관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지자체 CCTV 관제 예산에 대한 보조도 필요

* △범죄 등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 △실종 발생 시 실종자 신속 추적 등 기술

- (돌봄 공백) 약취·유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경우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함

※ 맞벌이부부 증가로 보호자없이 하교 후 학원 등으로 가는 저연령아동 증가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발생 초기부터 민감·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 대상 범죄는 무관용·고위험 범죄임을 널리 각인, 약취·유인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 향상 필요

◇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환경 구축 급선무

III.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 아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 √ 대국민 “인식 개선 확산”으로 약취·유인 경각심 제고
- √ 아동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구축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사회 구축

약취·유인
엄정대응

아동·일반국민
인식개선

통학로안전
환경조성

엄정 대응	신고 총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약취·유인 신고 총력대응 ② 약취·유인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체계 정비 ③ 아동 약취·유인 신고 활성화
	엄정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엄정수사 기초 확립(아동학대 의율·범죄자 신상등록 공개 강화) ② AI를 활용한 범인 신속 검거 추진 ③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관련 법령 정비
인식 개선	유괴예방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 대상 체험형 교육(안전지도, 체험훈련 등) 확대 ② 법정 안전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 강화 ③ 학부모 대상 가정연계 약취유인 예방 교육 확대
	일반국민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국민 약취·유인 인식개선 캠페인 ②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및 영상 제작 ③ 현장형 전문강의 확대(경찰관 등 전문강사 육성) ④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도 적극 활용·홍보
환경 조성	아동 안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학로 범죄예방 진단으로 취약요인 발굴·개선 ② CCTV 설치확대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치안사각지대 개선 ③ 어린이 안전물품 지원 확대
	돌봄환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보호인력, 치안보호인력 활용한 안심등하굣길 마련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어린이 안전 보호시설 정보공유 강화 ③ 우리아이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 확대 ④ 아동 안전 우수시책 공유·전파, 전국적 확대 추진

IV. 추진 과제

1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1. 약취·유인 신고 총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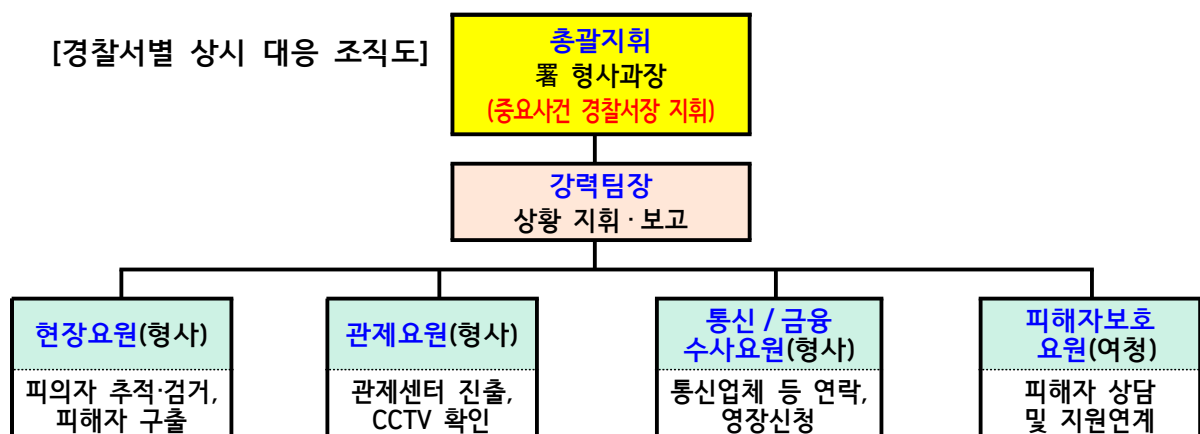
○ (112신고)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C1 이상^{C0·C1}으로 지정,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동시 출동하여 총력 대응

- ▶ <동시출동> 미성년자 약취·유인 112신고 시 지역경찰과 형사(강력팀) 동시 출동, 신속한 ▲피해자보호 ▲가해자 추적·검거 ▲증거확보 시스템 마련
- ▶ <상황관리> ▲피해자 진술 ▲목격자 확보 ▲CCTV 확인 등 필수 확인 사항을 마련, 112상황실에 의한 재확인 체계 구축
- ▶ <종결관리> 112신고처리 종결 시 범예·형사·여청 등 관련 기능 합동 적정성 검토

○ (약취·유인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체계 정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관련 전국 경찰서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중요사건 경찰서장 지휘)

-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관련 기능 합동으로 상시 대응

- ❖ 납치가 진행 중이거나 피의자가 다른 강력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경우처럼 범행 중대한 경우 16개 시도청 형사기동대 투입, 경찰서 강력팀과 추적 공조하여 사건 조기 해결
- ❖ 추가피해 우려되는 피해자는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실시, 필요시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연계
- ❖(모의 훈련) 미성년자 약취 후 차량 등으로 도주하는 상황 가정, 신속 검거를 목표로 한 훈련을 주기적 실시, 예상 도주로 차단 등 긴급 배치 훈련을 통해 임무 체득화



2. 업정수사 기조 확립

- (업정 수사)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속영장 적극신청 등 업정 대응**
 -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구증하고,
 - 가해자 제재(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적극 의율
 -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 * 약취·유인 행위가 주로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이뤄지고, 아동이 심각한 공포감과 추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적용 관련 검토

-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① 정서적 학대 여부 : 가·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피해아동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상태, 발생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범행 경위, 반복성이나 기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판단 필요(대판 2017도5769)
 - ※ 단, 모든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
- ▶ [형량 강화의 실익 여부] 아동학대 행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인 형법·특가법이 적용되므로 형량 강화의 실익은 없음
- * 특가법 최대 사형무기, 형법 10년↓, 아동복지법 5년↓·5천만원↓, 아동학대처벌법은 처벌규정 無

- (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성명, 나이, 거주지, 사진 등) 공개 강화
 -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

* 제2조(정의)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통계관리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중 경찰이 피해 아동을 구조한 건수나 연계된 범죄 유형 등에 관하여 별도 통계로 未관리

- 향후 △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 △ 연계범죄(추행·감금 등) 등을 확인,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 개선(~'26년)

3.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

○ (대국민 홍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콘텐츠로 제작,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독려

< 주요 사례 유형 >

- 초4 여학생에 “맛있는 거 사줄테니 편의점에 가자”며 유인, 경비원에 도움 요청
-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3 여학생에게 “돈을 줄테니 뒤에 태워달라”며 접근
-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애완동물, 장난감을 보여줄게”라며 유인
- 운동 중인 15세 여학생에게 “차에 태워줄까”라며 유인(거부하자 1분간 서행 추적)

○ (지역기반 감시망 강화) 관계부처 합동캠페인, 지역기반 맘카페 등을 통해 지역주민 각자의 ‘감시자’ 역할 강조, 사소한 접근도 신고토록 홍보

※ 특히, 아동 접촉이 빈번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하로 주변 편의점·문구점 등에 홍보물 게재, 종사자와 아동의 아동약취·유인 관련 신고철저 교육 및 우수사례 포상, 전파

○ (첩보수집 확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소통을 통해 범죄신고 되지 않은 약취·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지, 엄정 수사

⇒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 도모

4. AI를 활용한 범인 신속 검거 추진

-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보급
 - AI 활용 △얼굴·차량 번호판 화질 개선 △블랙박스 삭제 영상 복구 등 피의자 인상착의·도주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영상분석 기능* 지원
 - * △안면 정보 추출·분류 △화질 개선·복원 △높이(키) 측정 △번호판 복원
 - 금년 중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43개팀에 도입 및 5년간 전국 경찰서 순차 보급으로 피의자 신속 검거 및 수사 완성도 제고

5.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관련 법령 정비

- 범죄 억지력 향상을 위한 법정형 강화 입법 논의 지원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

❖ [관련 입법 발의 현황]

▶ 형량 강화 관련 「형법」 개정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 (의원안)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 (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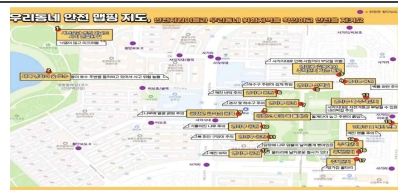
< 現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적 형량 및 양형 기준 >

구분	미성년자(19세 미만) 약취·유인 ^{형법 287조}	13세 미만 약취·유인 ^{특가법 5조의2}			
		재물 취득 목적	실제 재물 요구 時	살해 목적	실제 살해 時
법적 형량	10년 이하 징역	무기, 5년 이상	무기, 10년 이상	사형 무기 7년 이상	사형, 무기
양형 기준	기본 1년~2년 6월 / 감경 6월~1년 6월	기본 4년~6년 / 감경 2년 6월~5년	기본 5년~8년 / 감경 4년~7년	기본 6년~9년 / 감경 4~6년	기본 7년~10년 / 감경 5~8년

※ 이외 약취유인 후 상해·감금·유기 등 범행한 경우 형량과 양형기준은 높아짐

1.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 강화

- (아동 대상 예방교육)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확대**(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활용)



<안전지도 작성 및 매핑 교육>

<유괴예방 훈련>

- (안전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장애 학생 등)

* 생활안전교육 중 유괴예방교육 포함, 학기당 2회 이상, 각 학교급별로 필수 교육

※ 「유괴·미아사고 예방」 관련 7대표준안 내용체계표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1~2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5. 유괴·미아 사고 예방	14. 유괴·미아 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괴·미아 상황 이해하기 유괴·미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알아보기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아 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알아보기 유괴 상황 판단 및 예방법 알아보기 유괴 상황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선 곳에서 길을 잃어 버렸을 때 대처법 알아보기 유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의 위험성 이해하고 예방하기 실종의 개념과 예방법 알아보기 유괴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괴의 개념 및 대처 방법 파악하기 미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및 대처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괴·미아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숙지하기 유괴·미아 사고의 유형을 알아보고 상황별 대처 방법 토론하기

※ (다문화)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국어 버전의 유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98종), (장애학생) 수어, 화면해설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보급(98종)

- (찾아가는 체험교육 강화) 찾아가는 체험교육* 시 **신변안전(유괴상황 등) 포함**하여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

* △(행안부) 안전체험시설 부족 지역 대상 일상생활재난 등 체험형 교육(연평균 19개 지역, 5.7만명)
 △(교육부) ('17) 135교 → ('19) 335교 → ('21) 278교 → ('23) 563교 → ('25) 1,004교

- (부처간 예방교육자료 공유 강화) 행안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내 유괴예방 교육자료 연계, 공유

- (가정연계 교육)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

* 유괴예방수칙 및 자녀신상정보 SNS등 공개시 유의 등 내용 포함

2. 일반 국민 인식개선

○ (캠페인) 행안부 주관,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 주간 운영** (11월)

- 장난·호의 표현일지라도 약취·유인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홍보영상·카드뉴스 등 자료 제작
- 유튜브 등 SNS활용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 등 관계 부처·지자체별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적극 전파·홍보

< 주요 홍보·교육 내용 >

- 약취·유인 범죄의 원인은 **성인의 유인 행위 자체에 원인**
 - 특히 '장난' 등 이유로 아동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한 탓에, 정작 **아동이 느끼는 공포·불안에는 공감**이 부족한 문화
- 유인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는 장난으로라도 '같이 갈래?' 등 유인행위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교육·홍보

○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및 영상** 제작

- (**포스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중이용시설, 아동안전 지킴이집 등 2만5천여 개소 대상으로 약 8만 부 배포
- (**영상**) SNS 캠페인 및 아동안전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편의점 포스기로 송출
- 아동 대상 미아·유괴 예방 콘텐츠 지속 개발·배포 추진

○ (**현장형 전문강의 확대**) 관련 부처 협업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 인식개선 교육 시 활용

○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도 적극 활용 및 홍보

- 아동의 지문, 최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신속 발견 가능

※ 아동등(18세미만) 사전등록률 69.1%('25.8월 기준)

1. 아동 안전환경 조성

□ 통학로 범죄예방진단으로 취약요인 발굴 · 개선

- (취약요인 진단) 경찰 범죄예방인력을 활용, 주변 범죄 위험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적극 발굴 · 개선

* (범죄분석) PreCAS 등을 활용, 통학로 주변 위험도 및 범죄 · 112신고 발생 분석
(물리적 · 인구사회학적 진단) △ CCTV ·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의 부재, 통학로 인근 노후 주택밀집 · 유흥가 인접 등 장소적 특성 진단 △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현황 등

-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진단, 취약요인 발견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중장기 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책 수립

※ 범죄 · 안전사고 취약지 사전점검 → 관계기관 통보 → 대책 마련, 개선 시행 모니터링 등 종합대응

- (CPTED 확대) 범죄 다발 및 학부모 · 학생 불안지역,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 지자체 등과 협업,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집중 추진

※ CCTV, 비상벨 설치, 조명 개선,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등으로 가시성 제고

< 범죄예방 환경개선 우수사례 >

- ▶ [충남 아산] 초등학교 주변 포장마차 거리로 인해 우범화 진행, 아산경찰서-아산시 협업으로 CPTED 사업(6억원) 추진, 포장마차 거리 철거 및 CCTV, 조명 등 예방시설 확충



< 포장마차 거리 개선 前 · 後 >

< 안심부스 및 옐로카펫 설치 前 · 後 >

< 안심반사경 >

< CCTV 확충 >

□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을 일부 지원 추진(행안부·교육부·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설치 규모 결정)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자체는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인근에 필요시 아동보호 구역을 지정, 범죄예방 순찰 등 조치하고 CCTV 의무 설치(전국 1,071개소 지정, '25.10월 기준)

□ 지역내 CCTV 설치 확대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확대

- (CCTV 설치 확대) 아동보호구역 외에도 CCTV 지역별 편차 및 학생 유동인구 등을 고려, 우선 설치 필요구역에 설치 비용 지원

※ 지자체별 CCTV 설치 수요 조사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 연내 지원

- (지능형 관제체계 강화) 어린이 위험 상황이 발생 시 카메라로 촬영된 특정 상황, 행동, 속성을 AI가 분석하여 즉시 상황전파 및 대응

- 단기적으로 위험 영상·음성 자동인식*을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지원, 장기적으로 유괴 시도 식별 학습데이터 구축 및 AI 탐지모델 개발

* '24년 기준, 지자체 지능형 CCTV 선별관제 기술 37.5% 도입

2. 아동 안전물품 지원

- (안전물품 지원)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호신용 호루라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 지원 및 홍보 공동 실시

※ 새마을금고,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10여 개사

- (지원 물품^{참정}) 경보음 발생기, 호루라기(일반, 버튼식) 등 기관의 지원 희망지역,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선정 예정

- (배포) 민간 협업 현장캠페인 및 지자체를 통해 신속 배포

3. 돌봄 환경 강화

□ 아동보호인력,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한 **안심 등하굣길** 마련

- (하굣길 안심귀가 지원)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하교 지도 인력 충원(지자체) 등을 통한 **워킹스쿨버스 등 확대**(일부학교·저학년→전국·전학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 운영 중으로, '26년 노인역량활용사업(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을 활용하여 확대 추진

<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 사례 : 워킹스쿨버스 개요 >

- ▶ (개념) 버스와 같이 미리 여러 개의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10여 명)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 지원
 - * '10년에 행안부·교육부·경찰청 합동으로 제도 도입 및 '13년까지 직접 관리, 이후 지자체 별로 자체 추진 중
- ▶ (사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별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총 682명)하여 학기중 운영(노선당 최대 8명, 저학년 우선)

-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 배움터지킴이 · 학교보안관(교육부) 등 **아동보호 인력 확충** 및 **경찰과의 협력 순찰 강화**로 통학로 · 학교주변 안전확보

학교 수	경찰청 소관 (시·도 자경위)	교육부 소관 (교육청·지자체)				
	아동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이외		
		배움터 지킴이	기타 자원봉사	학교 보안관	민간경비 (주간)	사회복무요원 등
11,871개	10,811명 (증원 시 11,221명)	15,212	8,324	1,519	242	3,217
28,514명						

※ 경찰청-각 시도자경위와 협조, 아동안전지킴이 410명 증원 추진 ('26년)

- 학교는 등하교(방과후 등 포함) 취약 시간대 · 통학로 정보를 경찰 및 아동보호인력에 공유, 수요자(학생) 맞춤형으로 인력 배치 및 순찰
- 아동보호인력 대상 유괴 · 납치 미수(의심) 발생 사례 · 대응 방안 등을 수시 교육하고, 활동 우수사례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역 공동체 협업) 지자체 관제센터 · 경찰 협업 등 · 하굣길 CCTV모니터링 강화, 자율방범대,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등 민·경 협력단체와 함께 통학로 일대 범·민·경 협력체계 위주 순찰 활성화

□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어린이 안전 보호시설 정보 공유 강화

- 학교 주변·통학로 인근 아동안전지킴이집 대상 전수 점검 및 아동 보호 필요상황 발생 시 적극 보호하고 즉시 신고토록 수시 교육
-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등하굣길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적극 홍보, 어린이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아동안전지킴이, 지킴이집 우수사례 >

- ▶ [순천경찰서 지킴이 서00] '25.5.8. 순찰 중 50대 남성이 공원에 모여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가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제지, 경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기여
- ▶ [강진경찰서 지킴이집 유00] '25.6.27. 가게 앞에서 술취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데려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보호자인 듯 주의를 환기시켜 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제지

- 보다 쉽게 내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을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 지도 서비스(네이버/카카오지도)와 협업하여 상시 위치 검색 추진

□ 우리 아이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 학생이 정문 등을 통해 등·하교 시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안심알림서비스의 전학년 대상, 전국적 운영 확대 추진
- 자녀의 등·하교 상황 실시간 확인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낮추고 유괴 등 범죄 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 신속 대응 가능

<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 >

- ▶ 일부 시·도 교육청 주관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서비스 운영 중
- ▶ 향후 특별교부금 등 활용하여 비용 지원 추진
- * 예시) 학교장이 서비스 수요 확인 → 교육청이 업체 선정 후 비용 지원

□ 아동 안전 우수시책 공유·전파, 전국적 확대 추진

< 주요 지자체 우수사례 >

- ▶ (서울) '초등안심벨' 지금 확대(현재 1·2학년 → 내년 전 학년)
- ▶ (경기) 전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및 24시간 CCTV 통합관제
- ▶ (경기광명) '광명안전단' * 운영하여 학교, 공동주택, 주택가 인근 등하굣길 주변 순찰, 조례 제정
*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아파트 봉사단, 학부모 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단 참여

V. 향후 계획

□ 즉시 추진

- 약취·유인 신고 **총력대응**(즉시 출동, 경찰·형사 동시출동 등) 및 약취 유인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체계 재정비**(중요사건 경찰서장 지휘)
- 약취유인 범죄(미수 포함)를 **아동학대 범죄로 의율**하여 엄정 수사
- **AI를 활용한 범인 신속 검거 추진**(연말까지 시·도경찰청에 43개팀 도입)
- 관계기관 합동 **전국적 캠페인 실시**(11.10.~21.)
 - ※ 지역별 캠페인 시 어린이 안전물품(경보기 등) 배포(민간기업 등 지원)
- **CCTV 우선 설치 필요구역에 설치 비용 지원**(~12월)
 - ※ 지자체별 CCTV 설치 수요 조사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
-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포스터·영상 등 제작 및 홍보**(~12월)

□ 대책 지속 관리

- (이행 상황 점검) 부처별 세부 과제 추진 상황 주기적 실적 관리
- (예산 확보)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및 향후 예산에 지속 반영되도록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 (정책 체감도 확산) 관계 부처 및 학교, 학부모 단체 등과 **간담회·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 경찰청장 직무대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인천 만월초 등 현장방문(9.23.)

붙임

부처별 세부 과제

4개 부처청(행안부·경찰청·교육부·복지부) 24개 과제 추진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①	약취·유인 신고 총력대응	경찰청	즉시
②	약취유인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체계 재정비	경찰청	즉시
③	약취유인(미수)범죄를 아동학대 범죄로 의율	경찰청	'25.下
④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	경찰청	즉시
⑤	AI를 활용한 범인 신속 검거 추진	경찰청	'25.下
⑥	약취유인 피의자 신상정보 적극 공개	경찰청	'25.下
⑦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관련 법령 정비	경찰청	'26.下
② 아동·일반국민 약취·유인 인식개선			
①	어린이 대상 체험형 교육(안전지도, 체험교육 등) 확대	교육부 행안부	'26~
②	법정 안전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 강화	교육부	'26~
③	부처간 예방교육자료 공유 강화	경찰청 교육부 행안부	'26~
④	학부모 대상 가정연계 교육 확대	교육부	'25.下
⑤	일반 국민 대상 아동학대 관련 인식 강화 교육·캠페인	경찰청 행안부	'25.下
⑥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및 영상 제작	복지부	'25.下
⑦	현장형 전문강의 확대(경찰관 등 전문강사 육성)	경찰청 교육부	'26.上
⑧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적극 활용·홍보	경찰청	즉시
⑨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안내 강화	경찰청	'26.上
③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①	통학로 주변 범죄예방진단으로 취약요인 발굴·개선	경찰청	'25.下
②	통학로 인근 CCTV 증설	행안부 교육부	'26~
③	AI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대	행안부	'26~
④	어린이 안전물품 지원 확대	행안부	'25.下
⑤	아동보호인력, 치안보조인력 활용한 안심등하굣길 마련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26~
⑥	등·하교 안심 알림 서비스 전국 확대 검토	교육부	'26~
⑦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	즉시
⑧	아동안전 우수시책 공유·전파, 전국 확대 추진	행안부	'25.下